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의미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규정의 의미는?

❖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생 중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판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

❖ 이에, 산재보험법 제123조는 근로자성이 없는 순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됨을 고려하여

-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 법령 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산재보험법에 한해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임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 특례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생의 경우, 산재보험 외 다른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기준법 등 타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도 발생하는지?

❖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다른 4대보험 및 노동관계 법령 준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범위

①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현장실습생' 범위는?

❖ 고교(일반계고, 특성화고), 대학(전문대학, 대학) 등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주관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실습수업 등'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산재보험법 제123조 및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 고시」에 따라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이나 현장 실습수업 등'의 범위는?

- ❖ 고교 및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든 현장실습*이 포함되나, 학원 등 그 외 교육훈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은 포함되지 않음

* 유급 여부, 실습기간 등 무관

- ❖ 업무 종사가 없는 단순견학*(observation),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 해외에서 진행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 단순견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획서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확인

** 대학산학협력활동 조사(교육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장실습

<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 공시대상 제외 현장실습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 ▲ 「선박직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실습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인턴
- ▲ 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

③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에 포함되는지?

- ❖ 포함, 실습학기제도 현장실습의 일환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교육부)

④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진행되는 현장 실습도 포함되는지?

- ❖ 포함, 산재보험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므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도 포함

현장실습생 사용 사업장 신고 및 보험료납부 의무

①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 조치사항은?

❖ 일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의 '고용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 현장실습생을 새로이 사용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다만,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제22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고용신고

- 01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
- 03 근로자고용신고(10501) 선택
-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신청구분 '산재' 선택
- 06 보험료부과구분 부호 '산재만 부과' 선택 및 사유 '현장실습생' 선택
- 07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신고서」 제출을 통한 고용신고

- 01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02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신고서란 체크
- 03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란에 '52-03' 기재
- 04 현장실습생 성명, 월소득액, 자격취득일 기재
- 05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② 현장실습기간 종료에 따라 더 이상 현장실습생을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 조치 사항은?

❖ 일반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사업주의 '고용관계 종료신고'와 동일하게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

- 현장실습생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는 현장실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 현장실습 종료일 등을 신고하여야 함

❖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방법은 일반 근로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와 동일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근로자 고용종료신고서(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서식)」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고용관계 종료 신고

- 01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탭 선택
- 02 고용관리 메뉴 선택
- 03 근로자고용종료신고(10502) 선택
- 04 사업장의 관리번호 선택
- 05 근로자고용신고내역 보험구분 '산재' 선택
- 06 산재보험 '상실일' 등을 입력한후
- 07 '월평균보수' 등을 입력한후 「접수」를 클릭하여 신고 완료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 직접 제출을 통한 고용관계 종료신고

- 01 '근로자 고용 신고서' 서식 준비(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참조)
- 02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 종료신고서란 체크
- 03 사업장 내용 기재
- 04 현장실습생 성명, 상실연월일 등 기재
- 05 신고인(대표자) 서명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제출

③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수총액 신고'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 ❖ 전년도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의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합산하여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함

④ 보수총액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의 범위는?

- ❖ 명칭에 관계없이 현장실습의 대가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
-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품을 모두 포함*하되 사업주 외의 자(학교 등)가 지급한 금품은 제외

* 임금대장, 표준협약서에 기재된 훈련수당 금액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해당 현장실습생의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

⑤ '무급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는지?

- ❖ 보험료 산정의 일반원칙(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된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 × 업종별 보험료율" 이므로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한 금품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0원임

사업주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 시 보상 및 제재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 현장실습생 고용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생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 특례적용 대상인 모든 현장실습생은 사업주의 신고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② 현장실습생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 현장실습생을 사용한 사업주가 고용신고, 보수총액 신고 등을 하지 않아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10%를 사업주에게 징수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 다만, 현장실습생 고용신고를 제 때 하지 못했더라도 보수총액 신고(매년 3월 15일) 시 전년도 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된 일체의 금품을 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정산한 경우 보험료 체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다가 현장실습생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징수**

*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현장실습생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최초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하여야 함

** 단, 징수액 한도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이내

보상범위·수준

① 현장실습생 산재 발생 시 보상범위 및 수준은?

❖ 근로자에 준하여 동일하게 보상(요양·휴업급여 등)

❖ 훈련수당을 받지 않았거나 훈련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준해서 보상

② 학교안전공제회(고교), 한국교육안전공제회(대학)의 공제급여와 중복 보상되는지?

❖ 학교안전법 및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에 따라 현장실습을 주관하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제도는 산재보험급여 제외부분만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현장실습생 안전공제 약관 제3장 제9조

참고

산재보험 급여종류 및 내용

급여종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최고보상기준:1일 214,402원의 70% -최저임금(1일 66,800원) 미달시 최저임금 지급
상병보상연금	2년이상 요양중인 재해자 중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 2급(291일분), 3급(257일분), 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애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연금 : 1급(329일분)~7급(138일분) 일시금 : 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년분 선급),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2년분 선급), 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진폐보상연금 : '10.11.21 도입, 기초연금(최저임금 365일분의 60%) + 진폐장해연금(1~3급 월11일분, 5~7급 월6일분, 9~13급 월 2일분)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	연금 : 급여기초년액 (평균임금× 365)의 52%~67%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진폐유족연금 : '11.11.21 도입, 진폐장해자가 생전에 받던 진폐보상연금 수준과 동일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상시간병 1일당 41,170원 수시간병 1일당 27,450원
직업재활급여	장해1급~12급장해급여자 또는 요양중으로서 장해1급~12급이 명백한 자 미취업자, 다른 훈련 미해당자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금액) 직업훈련비용: 6,000,000원(1인당) 직장복귀지원금: 300,000원~600,000원(월) 직장적응훈련비: 450,000원(월) 재활운동비: 150,000원(월)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최고 15,554,290원, 최저 11,097,760원